



## 1. 축산물 관련 주요사항

### □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제.개정 폴란드산 축산물(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등 2종)

- 가. 승인서식 : 돼지고기 및 그 가공품(개정)  
가금육 및 그 가공품(제정)
- 나. 적용일자 : 2023.02.27.발급분부터 즉시 적용

### □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제.개정 뉴질랜드산 멸균식육가공품

- 가. 개정사항 : 반추동물 유래 멸균식육가공품에 대한 멸균조건 수정
- 나. 적용일자 : 2023.03.01.발급분부터 즉시 적용

## 2. 식품 관련 주요사항

### □ 과일껍질 등 식물용기 사용한 빙과류 식물검역대상

식물류 용기를 사용한 빙과류 HS코드 번호 : 2105-00-9010

본 화물의 식물검역 신청 시 영하 17.8℃ 이하의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출해야 함으로 선적전 식물검역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.

#### ※ 주의사항

영하 17.8℃ 이하의 냉동처리 표시가 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더라도 **빙과류 용기가 수입금지 식물**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**부적합 조치**될 수 있음

2023.04.04.

### □ 베트남산 바나나 잔류농약(루페뉴론 )검사 지시

- 가. 수 출 사 : RED DRAGON CO. , LTD (베트남)
- 나. 검사대상 : 바나나
- 다. 검사항목 : 루페뉴론(Lufenuron)

### □ 2023 가정의달 수입식품 검사 지시

- 가. 가공식품 [과자류, 캔디류, 빵류, 침출차, 볶은커피, 과실주, 벌꿀]
- 나. 건강기능식품 [단일영양성분 복합영양소 제품, 프로바이오틱스, 프로폴리스추출물]
- 다.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인 보강 블로그 검색  
제목 : 2023 가정의 달 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

-----  
2023.04.06.

□ 모든국가 오크라 잔류농약(디노테퓨란) 검사지시

가. 검사대상 : 오크라(모든국가)

나. 검사항목 : 디노테퓨란(Dinotefuran)

-----

2023.04.07.

□ 한-노르웨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시범운영

노르웨이산 수산물 위생증명서(종이)를 앞으로 한-노르웨이간 통신망(XML방식)을 통해 전자 증명서로 전송 받는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범 운영함.

가. 국가 및 품목 : 노르웨이산 수산물(활갑각류, 활패류 제외)

나. 기 간 : 2023. 4. 11.부터(증명서 발급일 기준) \* 정식운영 2023.5.8일 예정

다. 방 법 : 시범운영 기간에는 종이 위생증명서와 전자증명서(전자위생증명서 번호 입력) 제출

- (수입신고인) 수입신고 시, 위생증명서 번호 입력 필수

-----

□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알림(효소제 함유 가공식품등)

가. 대 상 : 식품첨가물 효소제(프로테아제, 아밀라아제 등)를 원재료로 수입신고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

나. 조치사항 : 효소제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, **효소제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는 제조사의 상세 공정 제출**

효소제가 가공보조제(식품원료의 가수분해, 발효 등)로서 사용되었는지 여 및 최종 열처리 등으로 불활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가공보조제 목적이 아닌 경우 신고수리 불가

\* 효소제는 가공보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, 섭취 목적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

※ 참 고 : 효소제의 일반사용기준

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도가공과정 중 분해, 부과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최종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다. 시행일자 : (최초 수입제품) 즉시, (동일사 동일제품) '23.5.1.선적일 기준 적용

관련 업무에 참조하여 미리 자료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--

□ 중국산 L-트립토판 비선휘도 검사지시

가. 제 조 사 : XINJIANG FUFENG BIOTECHNOLOGIES Co.,LTD (중국)

나. 대상제품 : L-트립토판

다. 검사항목 : 비선휘도

-----

2023.04.11.

□ **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재지정**

검사명령 재지정 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재지정 검사명령 기간 : (기존) '22.4.23.~'23.4.22. → (재지정) '23.4.23. ~ '24.4.22.

가. 대상제품 : 구기자 / 국가 : 중국 / 검사항목 : 농약7종(아세타미프리드, 클로로벤주론, 트리플루무론, 클로르피리포스, 프로클로라즈, 비펜트린, 플루디옥소닐)

나. 대상제품 : 능이버섯 / 국가 : 러시아, 우크라이나 / 검사항목 : 방사능(요오드, 세슘)

다.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행한

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

---

2023.04.13.

□ **이탈리아산 복합조미식품 보존료 검사지시**

가. 제 조 사 : LE VIE DEL TARTUFO S.R.L.(LVDT S.R.L.)(이탈리아)

나. 식품유형 : 복합조미식품

다. 검사항목 : 보존료

---

2023.04.17.

□ **망고 잔류농약(헥사코나졸) 검사지시**

가. 대상제품 : 망고

나. 검사항목 : 헥사코나졸(Hexaconazole)

□ **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관련 주의안내**

가. 식약처에서는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제9조(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) 및 「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」

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람의 형태(골격 모양 포함), 사람의 머리, 팔, 다리 등의 특정부의 모양(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)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에 대해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판매나 판매목적의 제조·가공·수입·조리·저장·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음

나. 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보강 블로그 [\[정서저해 식품\]](#) 검색

---

2023.04.18.

□ **해외제조업소 '차등 등록' 시범 운영('23.4.1.~10.31.)**

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'해외제조업소 차등 등록\*'을 시범 운영('23.4.1.~10.31.)합니다.

\*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 인증서류 제출 의무화

모든수입 영업자분들은 건강기능식품 수입 신고 전(前) 해당 제품 제조업소의 식품안전 관리 인증서(HACCP, GMP 등)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식품안전관리 인증 서류 미등록 시 '24년 현지실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

2023.04.24.

□ **두리안-아세페이트, 대추-프로파자이트 검사**

가. 두리안 : 아세페이트(Acephate), 메타미도포스(Methamidophos)

나. 대 추 : 프로파자이트(Propargite)

---

2023.04.26.

□ **취나물 잔류농약(테트라코나졸) 검사**

가. 대상제품 : 취나물

나. 검사항목 : 테트라코나졸(Tetraconazole)

**3. 법령정보**

2023.04.20.

□ **분리배출표시 PET 표시방법**

색상이 없는 무색 페트인 경우 무색페트 [노랑색]

색상이 있는 유색 페트인 경우 플라스틱 PET [파랑색]

비닐류 [보라색] 캔류 [회색] 종이 [검정색] 일반팩[녹색], 멸균팩[청록색] 유리[주황색]

분리배출표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유예기간 :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--

2023.04.20.

□ **분리배출표시 PET 표시방법**

색상이 없는 무색 페트인 경우 무색페트 [노랑색]

색상이 있는 유색 페트인 경우 플라스틱 PET [파랑색]

비닐류 [보라색] 캔류 [회색] 종이 [검정색] 일반팩[녹색], 멸균팩[청록색] 유리[주황색]

분리배출표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유예기간 :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--

**4. 관세정보**

□ **5월 1일부터 「휴대품 신고서」 작성 없이 입국**

금년 5월 1일부터,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「휴대품 신고서」를 작성·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또한 7월부터는, 여행자가 관세청 앱(App)(「여행자 세관신고」)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.

\* '22.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,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,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「신고서(QR) 리더기」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

□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및 「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」 개정안을 5월 1일 (월)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#### 4. Bokang NEWS

SEOUL FOOD 202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개최안내  
일 시 : 2023.05.30.(화) ~ 2023.06.01.(목) 3일간  
주 최 : KORTA , KINTEX



---

식품검역, 축산물검역, 식물검역, 수산물검역 전문업체.

부서별 전화번호 안내

- 수출입통관업무 : 070-4014-3925 , 070-4014-3681
- 검역업무 가공식품 : 070-4014-3694 ■ 검역업무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 : 070-4014-3600
- 경리 및 회계업무(세금계산서) : 070-4014-8973
- 공용 대표 이메일 : [bokang@bkcus.com](mailto:bokang@bkcus.com) ■ 세금계산서 수신 전용메일 : [tax@bkcus.com](mailto:tax@bkcus.com)

관세법인 보강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으며, 저희 직원의 불친절 및 불공정 한 요구를 받으셨다면 전담 메일 [kjy@bkcus.com](mailto:kjy@bkcus.com) 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합니다.